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5
------------	-------

제출년월일 : 2012.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삭제 및 조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보건소에 실시하지 않는 증명 발급 및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골밀도 검사 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원가인상에 따라 검사료 인상(안 제2조 별표)
- 나. 65세 이상인 환자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 확대(안 제3조)
- 다. 결핵사업으로 징수된 세입 재활용 규정 삭제(안 제4조)
- 라.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안 전반)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역보건법」 (법률 제9847호, 2010.12.30.)

- 2) 「지역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18호, 2012. 3.21.)
- 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04호, 2012.4.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2. 4.12. ~ 5. 2. (제출된 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5. 3)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6)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제2조제3항 중 “타 조례에 의거 ”를 “다른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감염된자”를 “감염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각종행사시”를 “각종 행사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65세이상인 자”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등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특수임무 유공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받아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장이”를 “받아 ”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수수료 액표 (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나.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마.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바. 방사선필름사본교부	CD 1장	3,000원	
	사. 그 밖에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아.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2. 항결핵제 보급	초·재치료 처방 및 투약	1인 1 개 월분	2,000원	단, 아이나 (INH) 단독 처방 및 투약 만 무료임
3. 유료접종	가. B형간염	1/0.5 ml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 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이하 금액은 1원이 상 49원이내의 경우 50원 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 로 한다.	
	나. 장티푸스	0.5ml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 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재주 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 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신증후군 출혈열	도스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 의원에의 유료접종 약품 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 로 하며 1회용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 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 한다.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4.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나. 골밀도검사	1회	6,000원	무료대상자 • 관내거주 만65세 이상 인 사람 • 1,2종 의 료급여 수급 권자 • 12급 장애인
	다. 암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7,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 료급여 수급 권자 • 12급 장애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u>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u>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 <u>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u></p> <p>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p> <p>2. 항결핵제 보급</p> <p>3. 유료접종</p> <p>4. 검사</p> <p>5.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p> <p>6. 구강보건진료</p> <p>7.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p> <p>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u>타조례에</u> 의거 수납한다.</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u>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u> 1종 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1조(목적) -----</p> <p>-----</p> <p>이용하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p> <p>-----.</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p> <p>② 제1항 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p> <p>&lt;삭 제&gt;</p> <p>③ ----- 다른 조례에 따라 -----.</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p> <p>-----</p> <p>-----.</p>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 방접종	2. (현행과 같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3. (현행과 같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u>감염된자</u> 의 검사 및 진료	4. ----- <u>감염된 사람</u>
5. 무의탁자의 진료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u>서울특별</u> <u>시마포구</u> 가 개최하는 <u>각종행사시</u> 의료지원	6. ----- <u>서울특별</u> <u>시 마포구</u> ----- <u>각종 행사시</u>
7. <u>65세이상인 자</u>	7.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u> <u>있는 만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u> <u>중 본인부담금</u>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 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u>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등</u> <u>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중 본인부</u> <u>담금</u>	8. ----- ----- ----- ----- ----- ----- ----- ----- <u>특수임무 유공자, 전상이나 공상을</u> <u>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u> <u>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u> <u>진료비 중 본인부담금</u>
9.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 비 면제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 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 ----- ----- ----- -----

현 행	개 정 안
<p>외 약국의 청구를 <u>받아 서울특별시</u>  <u>마포구보건소장이</u> 지출한다.</p> <p><u>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u>  <u>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u>  <u>각호의 결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u>  <u>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u>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u>  <u>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u>  <u>위한 장비구입</u>  <u>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u>  <u>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결핵사업비</u></p> <p>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p> <p>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u>받아 -----.</u></p> <p><u>&lt;삭 제&gt;</u></p> <p>제5조(납부방법) (현행과 같음)</p> <p>제6조(허위신청)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